



제429회국회(정기회)
제14차 행정안전위원회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공무원 채용시험 면접수당의 지급〉
■ 신장식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2646호)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공무원 채용시험 면접수당의 지급〉
■ 신장식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2647호)

2025. 11.

행 정 안 전 위 원 회

전 문 위 원 조 문 상

목 차

I . 개 요	1
【신장식의원안】 (국가공무원법)	1
【신장식의원안】 (지방공무원법)	3
II.검토의견	5
1. 개정안의 주요내용	5
2. 검토의견	6
※ 참고자료	10
1.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장식의원 대표발의, 2212648)	10

I. 개 요

【신장식의원안】(국가공무원법)

1.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 신장식의원 등 12인

나. 발의연월일 : 2025. 9. 3.

다. 회부연월일 : 2025. 9. 4.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는 공무원 채용시험 과정에서 응시자가 해당 시험을 위하여 사용하는 비용을 지급하는 근거 규정이 없음.

공무원 채용시험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이 응시자에게 부담이 되어 경제적 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공정한 경쟁과 폭넓은 인재채용을 위하여 채용시험에 대한 비용을 지급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응시자에게 면접 비용을 지원하는 조례를 제정한 것처럼, 국가공무원의 경우에도 비용 지급의 근거 규정을 마련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채용시험에 응시하는 사람에게 면접수당을 지급하도록 하고, 이를 시험 공고의 내용에 포함하도록 함(안 제85조의3 신설).

3.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신장식의원이 대표발의한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2648호) 및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264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신장식의원안】 (지방공무원법)

1.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 신장식의원 등 12인

나. 발의연월일 : 2025. 9. 3.

다. 회부연월일 : 2025. 9. 4.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는 공무원 임용시험 과정에서 응시자가 해당 시험을 위하여 사용하는 비용을 지급하는 근거 규정이 없음.

공무원 임용시험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이 응시자에게 부담이 되어 경제적 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공정한 경쟁과 폭넓은 인재채용을 위하여 임용시험에 대한 비용을 지급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응시자에게 면접 비용을 지원하는 조례를 제정하였는데, 법률로 임용시험에 대한 비용 지급의 근거 규정을 마련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임용시험에 응시하는 사람에게 면접수당을 지급하도록 하고, 이를 시험 공고의 내용에 포함하도록 함(안 제81조의3 신설).

3.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신장식의원이 대표발의한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2648호) 및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264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Ⅱ. 검토의견¹⁾

1. 개정안의 주요내용

개정안은 시험실시기관의 장에게 공무원 채용시험에 응시하는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면접수당을 지급하도록 하고, 지급 여부 및 금액을 채용시험 공고 내용에 포함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5조의3 신설).

현행	개정안
<u><신설></u>	<u>제85조의3(채용시험 응시자에 대한 면접수당의 지급) ①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28조에 따른 채용시험에 응시하는 사람에게 대통령령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면접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u> <u>②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지급 여부 및 금액을 채용시험 공고 내용에 포함하여야 한다.</u>

1)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의 조문 취지 및 개정 내용이 동일하여 「국가공무원법」의 조문을 기준으로 검토하였음.

2. 검토의견

현행법에서는 공무원 신규 채용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대통령령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도록 규정하고 있음.²⁾

* 공무원 채용시험 수수료(국가직·지방직)

- 5급 이상(외교관후보자): 1만원, 6·7급: 7천원, 8·9급: 5천원

그런데, 공무원 채용시험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이 응시자에게 부담이 되어 경제적 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공정한 경쟁과 폭넓은 인재채용을 위하여 채용시험에 대한 비용을 지급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으며,

현재 일부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에서는 공무원 면접시험 응시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면접시험 실비³⁾를 지원하는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음.

2) 「국가공무원법」 제85조의2(수수료) ① 제28조에 따라 공무원 신규 채용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대통령령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이 경우 수수료 금액은 실비의 범위에서 정하여야 한다.

② 수수료를 과오납한 경우 등 대통령령등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납부한 수수료를 반환받을 수 있다.

③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등 대통령령등으로 정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3) 지방자치단체나 교육청마다 면접시험 실비의 지원 여부나 지원 대상, 내용, 신청 방법 등은 다름. 경기도의 경우, 18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이 구직 활동을 위해 면접에 응시할 경우 면접 1회당 5만 원을 최대 10회(연간 최대 50만 원)까지 지원하고 있음.

《공무원 채용시험 면접 비용 지원 조례》

No	조례명	시행일자	비고
1	경기도 공무원 면접시험 실비 지원 조례	2020.11.12.	제정
2	경기도교육청 지방공무원 면접시험 실비 지원 조례	2022.7.1.	제정
3	경기도의회 공무원 면접시험 실비 지원 조례	2022.3.4.	제정
4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무원 채용시험 면접비 지원에 관한 조례	2023.1.1.	제정
5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공무원 채용시험 면접비 지원에 관한 조례	2023.1.1.	제정

자료: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이에 개정안은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채용시험에 응시하는 사람에게 대통령령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면접수당을 지급하도록 하고, 지급 여부 및 금액을 시험 공고의 내용에 포함하도록 하려는 것임.

개정안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계층에게는 면접 비용 자체가 응시의 진입장벽이 될 수 있으므로, 일정한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기회의 평등과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고 공직 채용의 접근성을 제고할 수 있다는 점에서 타당한 측면이 있음.

다만, 개정안을 심사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점들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음.

첫째, 현행법 제85조의2에서는 공무원 신규 채용시험 응시자에게 수수료를 부담하도록 하고 있어 개정안에 따라 신설되는 조문과 내

용이 상충되는 측면이 있는바, 개정안 논의 시 해당 조문이 함께 논의되어야 할 것임.

둘째, 국가공무원 채용시험은 공직 채용제도의 기준이 되는 대표적 시험으로 면접수당 지급 시 특정직공무원 시험이나 면접이 수반되는 자격시험 등으로 그 요구가 확산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그 파급효과를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음.

국회예산정책처의 비용추계 결과에 따르면, 개정안에 따라 공무원 신규채용 면접시험(일반직·특정직 등 포함)에 응시하는 사람에게 면접수당을 지급하는 경우 2027년부터 2031년까지 매년 24억 6,400만원씩 총 123억 2,000만원의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2027~2031년)》⁴⁾

(단위: 명, 백만원)

구분		2027	2028	2029	2030	2031	합계	연평균
채용시험 응시자 면접수당 지급 (안 제85조의3)	면접인원	49,282	49,282	49,282	49,282	49,282	-	-
	면접수당	0.05	0.05	0.05	0.05	0.05	-	-
	추가재정 소요	2,464	2,464	2,464	2,464	2,464	12,320	2,464

주: 본 추계는 인사혁신처 발간 「인사혁신통계연보」에 따른 신규임용 인원을 바탕으로 추계한 결과임.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자체적으로 채용한 인원은 제외되어 있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4) 「인사혁신통계연보」의 신규임용 인원에는 국가공무원법의 적용 대상이 되는 일반직공무원 외에 특정직, 별정직 등이 포함되어 있는데, 특정직공무원은 개별 법령의 적용을 받으나 국가공무원법 개정시 특정직공무원 시험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비용추계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임. 또한, 해당 통계의 경력채용 인원에는 각 부처에서 자체적으로 채용하는 인원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자체적으로 채용한 인원은 제외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임.

인사혁신처는 면접수당 지급이 응시료를 받는 기존 제도와 상충되고, 현재 실시되고 있는 다양한 청년 취업 지원 사업과 중복되는 측면이 있으며, 추가적인 국가 예산이 소요되어 재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행정안전부는 공정한 경쟁과 폭넓은 인재채용을 위하여 임용시험에 대한 비용 지급 근거를 마련하려는 개정안의 입법취지에 공감하나, 채용규모에 따라 과도한 예산 수반 등 행·재정적 부담, 지자체 재정 여건별 지급 기준 및 지급액 상이 등 형평성 문제, 동일·유사시험 응시생에게 수당 반복 지급 등 제도의 남용가능성을 고려하여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기획재정부는 채용으로 인한 혜택이 응시자에게 귀속됨에도 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국가시험 시행·관리에 대한 응시자 부담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제출하였으며,

교육부는 공무원 채용시험에서 면접수당 지급시 다른 채용시험 등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문 의 처
02)6788-5342

참고자료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장식의원 대표발의, 2212648)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구직자가 면접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교통비, 숙박비 등 다양한 비용이 소요되는 데, 소득이 없는 구직자에게 이러한 비용은 상당한 경제적 부담이 되고 있음.

또한 면접수당은 단순한 실비 보전의 의미를 넘어, 구직자가 면접 준비와 참여에 투입한 시간과 노력을 존중하고 보상하는 성격을 지님. 채용 면접은 구직자의 자발적 요청이 아니라 구인자의 인력 수요에 따라 진행되는 절차인 만큼,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구직자에게만 전가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음.

이에 채용 과정에서 면접을 시행하는 경우 구인자의 면접수당 지급과 지급 여부와 기준의 사전 통보를 의무화함으로써 채용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9조의2 신설 등).

< 참고사항 >

이 법률안은 신장식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2646호) 및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264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신설>	제9조의2(면접수당의 지급) ① 구인자는 면접시험에 응시하는 구직자에게 수당(이하 "면접수당"이라 한다)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구인자는 면접수당의 지급 방법과 지급 금액을 구직자에게 사전에 알려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면접수당의 기준 금액과 지급 방법은 면접 시험에 소요되는 비용, 대면 여부 등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17조(과태료) ① ~ ③ (생략)	제17조(과태료) ① ~ ③ (현행과 같음)
<신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④ 제9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면접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 구인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⑤ -----제4항----- ----- -----.